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64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복지 향상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을 위해 청춘극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춘극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의회 동의('12.10.5.)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청춘극장 운영

2)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 수립('10.4.9. 시장방침 제163호)

3) 사업기간 : 2020.1.1. ~ 2022.12.31

4) 필 요 성 :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필요

4) 사무내용 : 극장 관리 및 운영

(2)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 사옥 문화일보홀

- 규 모 : 지상 10층의 2층, 공용면적 포함 1290.44m²

- 주요시설 : 상영관(1층 198석, 2층 62석), 로비, 매표소, 매점 등

- 임대차계약 : 서울시 - (주) 문화일보(대표 이병규)

· 계약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계약금액 : 357,135,600원(부가세포함, '19년 기준)

(3) 운영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시설형)

- 소요예산 : 1,093,580천원('20년 예산 편성 요구)

- 운영시간 : 월~토 09:00 ~ 18:00

- 프로그램 : 영화상영, 수요일·토요일공원, 토요일문화교실, 찾아가는 청춘극장 등

- 이용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
 -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 정의) 준용
- 이 용 료 : 2,000원(市 세외수입 처리)

(4)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8월 임시회
-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 : 10월 초
-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 12월 중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동의안은 문화 활동이 비교적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어르신들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에게 영화·공연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극장’ 사업의 민간위탁을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의받고자 제출되었음.
- 청춘극장은 2010년 4월 9일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 舊 화양극장(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주)조이슈즈를 민간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1월 6일 화양극장 부지가 호텔 신축을 위한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면서 메가박스 은평(은평구 불광동)으로 이전되었음.

2010년 사업 시작단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동 사업의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2월 29일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절차에 추가되어 201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가결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09.7.30. 개정	2011.11.29. 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필요가 대두되고, 대관료 절감을 이유로 현재의 중구 문화일보홀로 2013년 3월 이 전되었음.

- 한편 민간위탁 사업자였던 (주)조이슈즈는 2014년 말까지 청춘극장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위반 소송 등 물의를 일으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며, 2015년 4월부터는 현재 수탁업자인 (주)추억을 파는 극장이 청춘극장을 운영 중임.
- 청춘극장은 2012년 10월 우리 위원회의 운영 동의안 통과 이후 2015년 2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이후 6년이 도래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수탁자인 (주)추억을 파는 극장(2015.2.25.~현재)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 총점 86.5점(100점 만점)으로 비교적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 수탁자인 (주)조이슈즈(2010.9.2.~2015.2.24.)가 청춘극장을 운영하면서 드러낸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무료공연을 확대하였고,

② 민간전문가(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서대문치매센터, FNI 기업 등)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다만 2016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긴급상황 대비 예산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이행되어 개선을 권고받았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간호인력 배치 2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예정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화상영에 치중되어 있는 청춘극장의 운영행태에 대해 민간극장과 차별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추억을 파는 극장은 청춘극장 운영을 공연 중심으로 탈바꿈하였음. 또한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춘극장’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16회에서 257회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의회의 사업 개선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노인복지법」 등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용 대상자에 대한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4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복지 향상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을 위해 청춘극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청춘극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의회 동의('12.10.5.)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무명 : 청춘극장 운영
- 2)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 수립('10.4.9. 시장방침 제163호)
- 3) 사업기간 : 2020.1.1. ~ 2022.12.31
- 4) 필요성 :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필요
- 4) 사무내용 : 극장 관리 및 운영

나. 시설현황

- 위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 사옥 문화일보홀

- 규 모 : 지상 10층의 2층, 공용면적 포함 1290.44m²
- 주요시설 : 상영관(1층 198석, 2층 62석), 로비, 매표소, 매점 등
- 임대차계약 : 서울시 - (주) 문화일보(대표 이병규)
 - 계약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계약금액 : 357,135,600원(부가세포함, '19년 기준)

다. 운영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시설형)
- 소요예산 : 1,093,580천원('20년 예산 편성 요구)
- 운영시간 : 월~토 09:00 ~ 18:00
- 프로그램 : 영화상영, 수요일·토요일공원, 토요일문화교실, 찾아가는 청춘극장 등
- 이용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
 -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 정의) 준용
- 이 용 료 : 2,000원(市 세외수입 처리)

라.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8월 임시회
-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 : 10월 초
-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 12월 중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2133-2531)